

2026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앞산재활주간보호센터

1. 운영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 1)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2)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에 따른다.

◆ 본인부담률

수급자격	일반	기초	감경(9%)	감경(6%)	의료(6%)
본인부담률	15%	0%	9%	6%	6%

◆ 공단 급여 수가 (2026.01.01 ~ 2026.12.31) (단위: 원/일)

이용시간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
3 시간 미만	33,460	30,980	28,590	27,300	25,990	25,990
3 시간 이상 ~ 6 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 시간 이상 ~ 8 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 시간 이상 ~ 10 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 시간 이상 ~ 13 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 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가족휴가 12 시간 미만	37,030	34,290	31,680	30,840	30,000	30,000
가족휴가 12 시간 이상	74,060	68,580	63,350	61,680	60,000	60,000

◆ 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월)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비급여 수가 (2022.10.01 부터)

청구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2,000 원 / 저녁 1,000 원	1 식 기준, 식사 기록건만 청구
② 이·미용비	실비	1 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500 원	1 식 제공 횟수 기준
④ 기타비	수급자별로 계산	

※ 상기 급여비용은 2026 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고시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